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 등 명시〉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3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6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2. 27.
- (3) 회 부 일 : 2025. 2.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안경사의 정의규정 중 주된 업무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안경사”란 <u>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u>	제1조의2(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안경사”란 <u>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u>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1조의2제3호는 안경사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에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¹⁾

- 동법 시행령 제2조²⁾ 및 [별표1]에서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된 일부 굴절검사를 포함하고 있음.

<안경사의 업무 범위>

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2)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3)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4)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나.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 개정안은 안경사의 정의규정에 굴절검사 시행 등 실제 안경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타당한 측면이 있음.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령에 따라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굴절검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것으로서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①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와 ②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제한되고 있음.

< 굴절검사의 종류³⁾ >

굴절검사 종류		특징
현성 굴절검사	타각적 굴절검사	-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의 모습을 자동굴절기기, 검영기의 관측장치를 통해 관찰 - 자동굴절검사법과 사진굴절검사법 등이 있음
	자각적 굴절검사	- 환자의 반응에 의존하여 굴절력을 검사하는 방법
조절마비굴절검사 ⁴⁾		- 과도한 조절현상이 있거나, 굴절이상 검사의 오차가 심할 경우 조절마비제를 사용하여 안정된 상태의 굴절력을 검사하는 방법

자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재구성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에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를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 제3조에 따라 시행령에서 굴절검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률에서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규정할 경우 현행 시행령이

3) 이와 달리, 굴절검사를 피검사자의 반응 여부에 따라 타각적 및 자각적 굴절검사로 구분하고, 검영기, 검안경 외에도 세극등현미경, 각막곡률계, 각막지형계, 자동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한 검사를 타각적 굴절검사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도 함. (김영필 등,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안경사의 인식 조사’, 대한시과학회지 제24권 제2호, 2022)

4)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굴절검사는 안구 건강상태(각막 이상, 백내장, 망막박리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약제를 이용한 조절마비굴절검사는 동공차단으로 인해 급성 폐쇄각 녹내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허용하고 있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타각적 검사’ 등 모든 굴절검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대한안경사협회는 동 개정안에서 추가하는 업무 내용이 현행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동 개정안으로 인하여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우려는 없다는 입장임.⁵⁾

□ 둘째, 안경사의 정의를 현행과 같이 두더라도 제3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부가되는 일부 굴절검사를 허용함으로써 현장에서 안경사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⁶⁾

5) 참고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들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으므로[참고자료], 안경사의 업무영역에 모든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음. (이익한 등, ‘안경처방을 위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타당성에 관한 연구’, 대한시과학회지 제13권제1호, 2011)

6)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92헌마87)

- 심판대상규정(당시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안경사는 시력보정용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 판결 전문 이유 중 “자동굴절검사기기가 안과의사의 진료과정의 일부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의료기사법령상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사람의 눈의 비정시(非正視)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경을 조제함에 있어 시력표에 의한시력검사에 따르는 부정확성과 불편을 줄이고 시력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중략) 안경사가 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 대신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안된 장치인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문화적 기기(利器)를 안경조제에 원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안경사에게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현행법체계 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 및 안경사 등의 주된 업무를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안경사 경우만 구체적인 업무내용(굴절검사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 및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행령상 안경사가 수행 가능한 굴절검사는 ‘일부 굴절검사’로 제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굴절검사 시행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안경사에 허용되지 않는 굴절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반대)

-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고 있으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법 해석 및 적용상에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3) 대한안과학회(반대)

- 개정안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 후 시력저하, 이물감, 충혈 등의 발생원인 분석과 치료는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임.

□ 개정안은 안경사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전체 굴절 검사 시행을 허용하여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행위를 안경사에게 허용할 경우, 오진 및 진단 지연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안경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음.

(4) 대한안경사협회(찬성)

□ 개정안은 안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시력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동법 시행령 상의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굴절검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정확한 조제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개정을 통해 올바른 시력보정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임.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검안용 기기의 의료기기 등급
-------------	------------------------

-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기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 1)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 2)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 3)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 4)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검안용 기기는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음.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中 (품목명 옆 숫자가 등급)	
A28000 검안용 기기 Eye testing instruments	
A28010.01	탐색등 현미경 [1] Microscope, light, ophthalmic, slit 강한 빛을 가는 틈으로 눈에 쬔어 눈을 검사하는 기구
A28010.02	안과용 광학 현미경 [1] Microscope, light, ophthalmic 안구 등의 검사, 관찰 및 촬영에 이용하는 광학 현미경
A28020.01	각막경 [1] Keratoscope 각막을 검사하는 기구. 전지 등을 사용하며 각막 표면에서의 빛의 반사를 시험하여 각막을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A28030.01	검안용 굴절력 측정기 [2] Ophthalmic refractometer 망막에서의 빛 반사를 측정함으로써 눈의 굴절력을 검사하는 장치
A28040.01	수동식 검안용 굴절력 측정기 [1] Refractometer, ophthalmic, phoropter, manually-operated 눈의 굴절력 오차를 측정하고자 굴절력이 다른 여러 개의 렌즈를 조합한 기구
A28050.01	의료용 입체경 [1] Stereoscope 하나의 물체를 찍은 사진 두 장을 조합해서 입체감을 일으키게 하여 사시의 각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기구
A28060.01	각막 곡률반경 측정기 [2] Keratometer 각막 및 수정체에서 반사된 상의 크기를 측정하여 굴절력과 그 결함을 측정하는 기구
A28070.01	검영기 [1] Retinoscope 눈의 굴절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광속을 눈 속에 방사하여 망막 표면의 조사부의 움직임, 집중 광에 따른 반사를 관찰하는 전지 등을 사용하는 기구
A28080.01	각막 내피세포 촬영장치 [2] Ophthalmic endoscope 각막에 광을 입사하여 각막 내피세포를 촬영하는 장치
A28090.01	전안부 촬영장치 [1] Camera, ophthalmic 반사광을 이용하여 안구 앞부분을 단순히 촬영만 하는 장치

A28090.02	전안부 촬영장치 [2] Camera, ophthalmic, system	반사광을 이용하여 안구 앞부분을 촬영 및 영상 출력부를 포함하는 장치
A28100.01	안저 카메라 [2] Fundus camera	동공에 빛을 입사하여 안저를 조명하고 그 반사광에 따른 안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기구
A28110.01	안구운동 감시장치 [2] Monitor, eye movement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 기록하는 장치
A28120.01	검안경 [1] Ophthalmoscope	눈의 망막, 각막, 방수, 수정체, 초자체 등을 검사하는 기구
A28130.01	수동식 시야계 [1] Perimeter, manually-operated	다양한 위치에 수동으로 표시한 작은 광점(점)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시야측정을 하는 기기
A28130.02	자동 시야계 [1] Perimeter, automatic	다양한 위치에 자동적으로 표시한 작은 광점(점)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시야측정을 하는 기기
A28130.03	평면 시야계 [1] Perimeter, flat	중심시야를 간이로 계측하는 측정기
A28140.01	시계조사 레이저장치 [2] Laser, ophthalmic	망막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망막에 레이저로 간섭 패턴을 조사하는 장치
A28150.01	검안용 광자극기 [2] Photosimulator	망막 기능 또는 시 기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빛으로 안구를 자극하는 장치
A28160.01	입체시 측정기 [1] Steropsis measuring instrument	서로 다른 평면상의 물체를 구별하는 거리 지각을 측정하는 기기
A28170.01	검안용 렌즈 [1] Lens set, trial	안구를 검사하는 각종 렌즈 및 렌즈 세트
A28175.01	검안용 프리즘 [1] Lens, fresnel	안구를 검사하는 각종 프리즘
A28180.01	검안용 판부착 렌즈 [1] Skiascopic rack	굴절력이 서로 다른 렌즈 여러 개를 판에 부착한 것
A28190.01	검안 렌즈 세트 [1] Trial lens	검안 렌즈 프레임에 끼워 눈의 굴절력을 검사하는 렌즈 세트
A28200.01	검안 렌즈 프레임 [1] Trial lens frame	눈의 굴절력 등을 검사하는 렌즈를 끼우는 프레임
A28210.01	동공계 [2] Pupillometer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동공의 폭, 반경을 측정하는 기기
A28220.01	간이 색각 검사기 [1] Ophthalmoscope, direct	다양한 색을 식별하는 능력을 신속히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각 검사기. 1개 또는 복수의 디스크 외에 원하는 색임을 나타내기 위해 수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착색유리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A28220.02	색각 검사기 [1] Optometer	착색실이나 색각플레이트를 이용한 색각 검사기
A28220.03	광각 검사기 [1] Ophthalmoleukoscope	편광을 사용한 색각 검사 기기

A28220.04	명암 순응계 [1]	Light and shade sensation test apparatus	여러 강도의 자극광원을 이용해 망막 순응에 필요한 시간 및 최소 광역치를 측정하는 기기
A28230.01	비전원 안과용 금속 탐지기 [1]	Nonelectrical metal locator	안구와 안와에 있는 금속 이물질을 찾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
A28230.02	전원 안과용 금속 탐지기 [2]	Electrical metal locator	안구와 안와에 있는 금속 이물질을 찾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원을 사용하는 기구
A28240.01	쉬머 스트립 [1]	Schirmer strip	망막 아래 눈꺼풀 결막에 삽입하여 눈물의 분비량을 관찰하는 종이 등의 재질로 만든 띠
A28250.01	망막 전위계 [2]	Electroretinograph electrode	광 자극에 따른 망막의 전위 변동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기구
A28260.01	안진계 [2]	Electronystagmograph	안구의 불수의 운동에 따른 전위 변동을 측정, 기록 또는 표시하는 기구. 평형감각을 측정하는 기구를 포함한다.
A28270.01	안압계 [2]	Tonometer, battery-operated	눈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로서 녹내장 등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한다.
A28280.01	안구 가압기 [2]	Intraocular pressure reducing system	안과 수술 전 안구에 압력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혈압계 형태의 압축구, 다이얼 지시기, 밴드 등으로 구성된 수동식 기구
A28290.01	홍채 촬영기 [2]	Camera, iris	홍채를 단순히 촬영만 하는 기구
A28290.02	홍채촬영 및 분석기 [2]	Camera, analyser, iris	홍채를 촬영하거나 분석하는 기구
A28290.03	망막촬영 및 보조 진단장치 [3]	Retinal diagnostic system	망막촬영 카메라로 망막사진을 촬영하고 망막영상을 사용하여 질병(안구 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등)의 유무, 질병의 중증도 또는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장치
A28300.01	영상 시력 측정기 [1]	Visual acuity projector	시력 측정을 위하여 스크린에 글(optotypes)이나 기호를 투영시켜, 일반적인 가시거리에서 식별되는 전원을 사용하는 장치
A28300.02	광학적 시력 측정기 [2]	Optics, visual acuity	광학적으로 원방 및/또는 근방의 시표를 제시하는 시력검사기
A28300.03	대비감도 측정기 [1]	Contrast and glare tester, automatic	시표의 크기와 선명도 변화를 주면서 피검사자의 반응을 통하여 대비감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계 또는 장치